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4.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전년대비)	2,306,400 (+236,500)	2,083,400 (+213,800)	1,485,700 (+29,900)	1,370,600 (+28,800)	1,177,000 (+25,400)	657,400 (+13,700)

2)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1.8~2%)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5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02일

참-더부러재가노인복지센터 (관인생략)